



저작권법 시행규칙

[시행 2012.10.18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, 2012.10.18, 일부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저작권정책과) 02- 3704- 9470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저작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체육시설의 종류) 「저작권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1조제3호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"이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6>

제3조(공고의 내용)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0.18>

1.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
2.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 또는 거소 등(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3. 저작물의 제호
4.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(실명 또는 이명)
5.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
6. 저작물의 이용 목적
7.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(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)
8. 공고자 및 연락처

제4조(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)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6>

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(저작물·실연·음반·방송·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·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)
2. 보상금액산정내역서
3.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
4. 저작재산권자·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(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5.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(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6.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[「저작권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]

제5조(보상금 공탁의 공고)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(이하 "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6, 2009.7.24, 2012.10.18>

1. 저작물의 제호(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)
2.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(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)
3. 저작물 이용의 내용
4. 공탁금액
5.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

6.
7.

6 () 26 1 , 57 (" ") , 63 (" ") , 90 98

. < 2009.7.24, 2011.12.2 >

1.

가. : 3 [(" ")] 4 ()
3 2
4 2

<2009.7.24>

: 7 8 ()
, 9 () 10 ()
: 11 12

2.

가. , : 5

6

: 5 2

: 4 2

5 2

: 13

14 () () () , 15
() () 16
()

17

18

:

1

. < 2009.7.24 >

1.
2.
3.
4.
5.
6.
7.

() 가 2
19
20
3
()
(26 2)
2 1 1

. < 2009.7.24 >

.< 2009.7.24>

6 2() 112 (" ") 6 2
3

.< 2012.10.18>

1

, 35

2

3 가 6 2 1 6 3

[2009.7.24]

7 () 27 2 (),
90 98 .<

2009.7.24, 2011.12.2>

- 1. : 21
- 2. : 21 2
- 3. <2011.12.2>
- 4. : 23
- 5. : 24

8 () 28 1 , , , 90 98

< 2009.7.24,

2011.12.2>

- 1. : 25
- 1 2. : 25 2
- 2. <2011.12.2>
- 3. : 27
- 4. : 28
- 5. , : 29
- 5 2. : 29
- 2
- 6. : 30
- 7. :
- 31
- 28 2 32
- ()

< 2009.7.24, 2011.12.2>

9 () 30 . .
 (" ") 33
 . < 2009.7.24, 2011.12.2 >
 1.
 2. ()
 3. ()
 34
 1.
 2. ()
 3.

10 () 34 35
 . < 2009.7.24, 2011.12.2 >
 1
 , . < 2009.7.24 >

10 2() 35
 .
 [2009.7.24]

11 () 36 3 36
 36 4 37

12 () 37 1
 . < 2009.7.24 >
 1. : 38
 2. : 38 2
 37 3 . < 2009.7.24 >
 1. : 39
 2. : 39 2

13 (.) 40 . 40 .
 40 1 ,
 ()
 , 40 2 40 1
 . < 2011.12.2 >

14 (.) 41 1 . 41 ,
 42 .

15 (.) 42 . 43
 . 42 1 ,

2 () , 42
42 1
. < [2011.12.2](#)>

16 (•) 43 1 • 44
•

16 2() 44 3 44 2
44 4 2 44 3 , 44 4 3
44 4
[[2011.12.2](#)]

17 () 45
45 45 ,
()

18 (가) 105 1 가
46 가 . <
[2009.7.24](#)>

- 1.
2. ()
- 3.
4. ()
1 「 」 36 1
() . < [2009.7.24, 2012.4.5](#)>
47 2 가 47

19 () 105 1
48
1.
2. ()
3. ()
4. ()
1 「 」 36 1
() . < [2009.7.24, 2012.4.5](#)>
48 2 49
48 3 50

20 () 52 1
3 31 . < [2008.3.6](#)>

1.
가.
•
- 2.

가.

52 2

3 31

.< 2008.3.6>

1.

2.

52 3

.< 2012.10.18>

21 () 54 1

51

22 () 54 5

52

23 () 132

가

가

53

54

(

90

98

)

50

1

.< 2009.7.24, 2011.12.2>

<2012.4.5>

24 () 69 2

53

69 2 3

54

,

55

55

2

(

)

[2009.7.24]

25 () 70 2

56

26 () 72 2, 72 3 2 72 4 2

57

72 5

57 2

[2009.7.24]

27 ()

72 2

72 4

58

.< 2008.3.6,

2009.7.24>

28 () 75 1

59

29 () 75 2

60

30 () 76 2

61

,

76

3

62

31 <2009.7.24>

< 134 ,2012.10.18 >